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본 센터는 이용자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데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0조 (이용 및 이용계약기간)

- ① 이용 및 이용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인정 만료일 기간까지 한다.
- ② 이용자 및 이용자는 장기요양등급 갱신에서 이용가능 등급판정이 난 경우에 계약기간을 협의 후 연장 할 수 있다.

제27조 (월 이용 및 이용비용)

- ① 이용비는 매년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장기요양수가에 의거한다.(해당 연도 장기요양 보험수가 적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별표1,2에 근거하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 ② 이용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익월 10일경 보호자 가정으로 인편 또는 메일로 통보하여 말일까지 후불로 청구하며, 이용비가 보호자의 명의로 납부되도록 한다.
- ③ 이용자가 퇴소한 경우 퇴소한 날짜를 기준으로 이용비를 정산한다.
- ④ 시설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일반은 15%,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9%, 6%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한다.
비급여인 식재료비, 간식비 등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⑤ 등급외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규정에 따른다.

등급	내역	기초
1~6등급	1일 해당수가 X 해당 월 일수 X 본인부담율 (15%, 9%, 6%)	면제

제28조 (이용 및 이용비용의 변경방법)

- ①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 후 이용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등급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② 비급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와 합의를 거쳐 이용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비급여 항목(식비 및 간식비 등)의 비용이 변경된 경우

구분	내역	비고
식대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 금액에 준함	간식포함(1일2회 제공)

제29조 (이용 및 이용비용의 변경방법 절차) 이용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적용하며 급여비용이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 변경된 비용에 대한 안내문을 보호자에게 발송 및 안내한다.
- ② 비급여 비용의 변경은 시설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한 후 보호자회의를 통해 알리고,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보호자에게 재공지한다.

제30조 (미이용 비용산정)

- ① 갑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을’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①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약속된 내용을 이행 받을 수 있고, 갑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이행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계약 시 보증인 및 신원인수인은 요양원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이용자로 인해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시키거나 본 센터에서 원상회복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출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을 경우에 상해치료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지불하며 법적인 책임도 가진다.
- ④ 이용자 및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⑤ 이용자 및 이용자의 월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및 월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⑥ 이용자 및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가족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즉시통보 의무
- ⑦ 신원보증인이 장기출장 및 신원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 선정 의무
- ⑧ 이용자나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22조 (계약변경)

- ① 갑과 을의 계약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1개월 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계약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으로 재계약을 한다.

제23조 (계약해지 및 종료) 갑과 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퇴소해야할 경우에는 을의 신병인수인은 즉시 을의 신병을 인수해야 한다.

① 갑의 해지 사유

1. 시설의 경우에 장기요양등급 갱신 결과, 5등급 이하로 재가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2. 이용비용 및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을 2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3. 이용자 및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4. 지병이 심각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경우(최대 10일 이상)
5. 시설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이용자와 보호자가 성실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② 을의 해지사유

1. 이용자는 본 시설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2. 을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14일 전에 서면이나 전화로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4조 (계약의 종료)

- ① 을이 사망하였을 경우
- ② 갑 또는 을이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 ③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등급외자로 변경된 경우

별표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2026. 01. 01. 기준)

- 이용대상 : 장기요양 등급, 등급 외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환을 앓는 분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 정 원 : 21명
- 운영시간 : 월~금 08:00~22:00(송영 시간 포함)
토, 일, 공휴일 08:00~17:00(송영 시간 포함)
- 차량운행 : 영등포구 관내(시설기준 5km내, 1시간내 송영서비스 제공 가능한 경우)
- 주야간 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자지원 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41,820	38,720	35,740	34,120	32,490	32,49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44,65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56,360
10시간 이상 ~13시간 미만	76,820	71,160	65,750	64,090	62,460	62,460
13시간 이상	82,370	76,310	70,500	68,860	67,240	67,24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자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 계약 기간 중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 없이 이를 반영함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9%
저소득층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 비급여 항목: 1식 4,000원/간식비 1,000원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별표 2

비급여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수납 기준

★ 비급여 수가

비급여 청구 항목	금액	비고
① 1식 식사재료비	4,000원	* 식사 2회 8,000원
② 간식비	1,000원	* 간식 2회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시설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2) 세부기준
 - (1) **식사재료비** : 경관 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 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2) 세부기준
 - (1) **주·야간 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하면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매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은 비용수납 불가
 -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